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무기체계 시험평가의 결과판정은 시험평가 항목별로 기준 충족 또는 기준미달과 전투용 적합 또는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하고 있는바, 무기체계의 주요성능이나 임무수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항목이라 하더라도 전투용 부적합으로 판정함으로써 불가피하게 전력화일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전투용 부적합 판정대상이라 할지라고 일정한 조건 하에서 보완이 가능한 경우 경미한 항목 등에 대하여는 조건부 적합으로 판정하여 현재의 경직된 이분법적 시험평가 결과판정에 대한 유연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무기체계를 전력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9. 25. ~ 11. 1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본문 중 “적합 또는”을 각각 “적합, 조건부 적합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의 결과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① 연구개발하는 무기체계의 시험 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제17조(시험평가결과의 판정) ①-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운용시험평가 : 전투용 <u>적합</u> <u>또는</u> 부적합. 다만, 함정 등 개 발 및 설계를 거쳐 최종 생산 에 이르기까지 장시간이 소요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개 발 중에 당해 사업의 계속적 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전 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2. ----- <u>적합</u> , <u>조건부 적합</u> , 또는 ----- ----- ----- ----- ----- -----.
②구매하는 무기체계의 시험평 가결과는 전투용 <u>적합</u> 또는 부 적합으로 판정하되, 전투용 적 합으로 판정한 무기체계를 구매 · 재구매하는 경우[구매의 경우 에는 구매절차 진행 중 시험평 가를 거친 경우로서 구매절차가 중단되었다가 재개(再開)된 경 우로 한정한다]에는 국방부장관 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시	②----- ----- <u>적합</u> , <u>조건부</u> <u>적합</u> , 또는 ----- ----- ----- ----- ----- -----

험평가 없이 기존의 시험평가결과로 대체하여 판정할 수 있다. ③연구개발하는 핵심기술의 시험평가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판정한다. 1. (생략) 2. 운용시험평가: 군사용 <u>적합</u> 또는 부적합. 다만, 연구개발 중에 해당 사업의 계속적인 추진 또는 후속 단계로의 진행을 위하여 잠정적으로 군사용 적합 판정을 할 수 있다. ④·⑤ (생략) <u><신설></u>	----- -----. ③----- ----- -----. 1. (현행과 같음) 2. ----- <u>적합</u>, <u>조건부 적합</u>, 또는 ----- ----- ----- ----- -----. ④·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평가의 결과판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	--